

『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·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규정(안 제4조)

다.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,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
라.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, 단체, 연구소,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 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 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 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은,
 -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행정적·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,
 - 구미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총 123개사, 종사자수 13,000여명, 매출 12조4,869억원, 수출액 7,117백만불('21.12월 기준)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구미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더불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수출 성과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